

국제기구의 제품안전확보 활동



허 경 옥 교수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은 개인 소비자, 기업, 개별 국가 외에도 전 세계 국가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세계 각국은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사고나 위해발생시 리콜, 제조물책임제도 운영, 강력한 징벌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각 개별 국가들의 제품안전정책 및 법 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간의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소비자들의 제품안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안전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제품안전,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화, 지구촌화, 그리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안전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의 기관들이 서로 안전정책, 안전관리법제도, 안전정보시스템을 공유하고 협조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SO(국제표준화기구)로서 국제적인 안전 관련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ISO의 국제규격 예를 들면 ISO 9000(품질관리에 관련한 국제표준규격)의 규격은 자발적 규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세계회원국들이 ISO의 규격에 따라가는 추세이고 개별 국가의 규격이 ISO 규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와 그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제무역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ISO 외에도 국제적 차원의 제품안전 또는 소비자안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소비자제품보전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ICPSC), 국제소비자기구(CI : Consumer International)¹⁾,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유럽소비자동맹(BEUC : Bureau of European Consumers Unions) 등이다. 국제기구의 제품안전 또는 소비자안전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1947년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추구, 국제규격 제정 및 보급,

1) CI(Consumer International)는 1995년 개정된 명칭으로 그 이전에는 IOCU(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 Union)로 사용되었다.

세계적 사용 홍보, 표준화 전반에 대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이다. ISO는 정회원(member body)²⁾과 통신회원(correspondent member)을 두고 있는데, 2008년 현재 105개국이 정회원이며, 42개국이 통신회원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SO는 년 1회 개최하는 ISO 최고의결기구로 총회(General Assembly)를 두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기구로서는 이사회(Council)를 두고 있으며, 자문기관으로서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되는 정책개발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 CASCO, 개발도상국위원회: DEVCO, 소비자정책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를 두고 있다.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실질적인 업무는 TC(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에 의해 수행되는데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내에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수행하여 국제규격을 작성한다. 한편, 기술관리부 추천을 조건으로 모체 TC에 의해 SC(분과위원회: Sub-Committee), WG(작업반: Working Group)를 운영하게 된다.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근 소비자분야 표준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제품리콜 표준화 위원회: TC³⁾ 240(Product Recall)
- 제품안전 표준화 위원회: TC 243(Product Safety)
- 중고제품표준화 회의: TC 245(Cross-border trade of second-hand goods)

소비자가 표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표준화가 소비자권리 실현의 수단이므로 중요하고, 표준은 과학, 기술, 경험의 통합적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한 작업이며, 표준화는 소비자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표준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표준개발이 중요하며(예: 요금청구제도, 제품리콜, 개인정보보호, 어린이 안전, 제품이나 식품안전 등), 표준화작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질적인 삶에 있기 때문이다.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1978년 ISO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출범하여 2008년 현재 정회원 61개국, 준회원 43개국으로 총 104개국이 회원국이다.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는 국제소비자 표준정책을 개발하고 ISO/IEC에 소비자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1978년 ISO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총 회원국은 104개국(정회원 61개국, 준회원국 43개국)이다. 주요 활동은 제품 안전

등 8개 작업반 및 의장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매년 총회 및 표준정책 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소비자표준정책개발 및 ISO/IEC에 소비자정책을 권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리콜표준화 개발 및 제품안전 가이드 제정을 추진한다. 매년 총회 및 표준정책개발



2) 정회원은 기술위원회(TC) 또는 분과위원회(SC)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P(Participating) 멤버, O(Obserber) 멤버 지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ISO 표준 제정 투표 권한을 가진다.

3) PC는 Project Committee 의 의미로 COPOLCO에서 제안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품안전 등 8개 작업반 및 의장자문단을 운영하며, 한국은 2002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여 2005년부터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표준업무에 대한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화로부터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및 국제 표준화에 소비자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ISO의 현재 또는 향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등에서 소비자입장에서 ISO 이사회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신규정책이나 기존정책 개정시 소비자의 의견,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ISO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ISO 정관에 따라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관리부(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표준화된 전문기술 업무 기획·조정하는 중앙사무국(CS: Central Secretariat) 등을 두고 있다.

2. 국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ICPSC)

국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ISPSC: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Caucus)는 각국의 제품안전동향 및 리콜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적 시장감시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결성된 국제회의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 및 2개 유럽 연합의 제품안전 정부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회의는 매년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의장은 네덜란드 메이저(Dirk Meijer)이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EMARS를 비롯한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정보교환과 뉴스레터 발간, 교육, 표준 개발활동 등을 하고 있다.

3.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는 1993년 제품안전 정부당국자와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변호사, 회계사, 컨설팅업체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ICPHSO는 각국의 제품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소개, 정보교류 및 제품안전 국제기준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 베데스다에서 제품안전 관련 각국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안전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는 베데스다 선언을 하기도 했다. ICPHSO 회의는 매년 초 미국에서 정례회의가 개최된다. 추계회의는 미국 외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그동안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 개최되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11년 ICPHSO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4.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최근 소비자안전 및 제품 안전정책에 관한 각국의 정보교환 및 공유, 집행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소비자안전문제를 공식 안전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로 소비자제품(non-food consumer product)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과 옵서버로 참여하는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 및 집행·감독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제도와 위해감축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결함 및 위해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집행공조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국제소비자기구(CI)

국제소비자기구(CI: Consumer International; 과거명칭 IOCU)는 196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창립하였는데 창설 이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쳐, 현재 약 120여 개국의 217개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그동안 제품의 표준, 환경, 건강, 사회정책 등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소비자안전활동이 세계적 활동으로 확대된 이유는 개별 국가의 안전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국제기구의 안전활동이 각국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소비자기구는 회원단체들에게 제품·서비스 조사 및 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안전 관련 국제기구활동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세계 소비자들의 약품사용의 안전, 위험의약품판매금지 등과 관련한 국제보건기구(WHO)에의 지원, 위험한 제품(예 : 결합있는 의류기구, 오염된 식품이나 살충제)의 국제적 유통이나 판매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국제경찰(Consumer Interpol)의 활동(1981년 창설)에 전폭적 지원을 한 바 있다. 1985년 소비자보호에 관한 UN지침(UN Guidelines)은 소비자안전, 제품기준, 교육 및 소비자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행동지침규약'에 소비자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소비자기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국제사회의 제품안전관리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은 바로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결정하는 안전과 관련한 기준들은 국제무역의 기준이 되며 분쟁발생시 문제해결이나 판단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의 안전기준강화에 의하여 후발산업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선진국에서 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자국의 안전기준을 어느 수준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다. 이 때 정부는 안전기준의 수준 및 안전인증대상 선정, 나아가 안전인증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국내 사업자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시에 세계의 시장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기준을 급속하게 강화하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면 국내시장은 선진 외국의 안전기준이 높은 제품으로 점령될 것이다. 그렇다고 안전기준강화 속도를 지나치게 늦추게 되면 후발산업국가가 생산한 안전기준이 낮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의하여 국내 제품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안전기준 관련 의사결정에서도 국제사회의 안전기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